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34호 2017. 12. 06.(수)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434호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사천시 조례 제1435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5
- 사천시 조례 제1436호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사천시 조례 제1437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0
- 사천시 조례 제1438호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18
- 사천시 조례 제1439호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22
- 사천시 조례 제1440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적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5
- 사천시 조례 제1441호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7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442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28
- 사천시 조례 제1443호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8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651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40
- 사천시 규칙 제652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49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7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2017-143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통장의 임무) ① 이·통장은 리·통 구역 안에서의 읍·면·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 4. 복지대상자 발굴 및 독거노인 방문·보살핌 등의 지역사회복지 사업 추진 지원
- 5.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 6.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
- 7. 각종 서류의 송달 협조
- 8. 전시 및 재난 시 주민홍보·계도
-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중 “제7조제4항부터 제5항”을 “제7조제5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이·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 및 질병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⑥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통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5)

조 례

사천시 조례 제2017-143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품)지급 제10조제1항의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다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제외되는 사람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6)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 제10조에 의한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자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자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7)

[별 지 제1호서식] <개정 17.12.6.>

사천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수급권자)	대상구분	대 상 : (본인, 유족)		
		보훈번호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전자정부법 제38조 등에 따라 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훈명예수당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열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급정지사유 발생(전출, 사망 등)시 까지 4. 동의거부권리안내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명예수당 등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input type="radio"/> 구비서류				수수료
1. 국가유공자(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7.12.6.>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대상자	대상구분	(본인, 유족)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전자정부법 제38조 등에 따라 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오</p> <p style="text-align: center;"><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p> <p>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망위로금 지급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됨</p> <p>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열람)</p> <p>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망위로금 지급시 까지</p> <p>4. 동의거부권리안내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p>			
<p>「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left: 20px;">사천시장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9)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3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적립금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10)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3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천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여성회관 내의 교육장, 회의실, 다목적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문화강좌, 세미나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행위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11)

4. ^{사람을 말한다.} “사용료”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수강료”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대가를 말한다.
6. “수탁운영자”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 교육
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취업 교육
3. 건강가정 육성·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4. 여성의 취업 정보제공과 상담, 취업 연계 서비스 지원
5. 여성단체의 상호교류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지원
6.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
2.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제5조(휴관일)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로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과 같이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12)

하며,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시간 초과로 인한 초과 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여성 법인 및 여성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2. 수강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별표 2에 따라 반환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13)

제9조(사용허가) ① 여성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행위, 정치활동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용 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강사위촉) ① 시장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14)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와 초빙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여성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회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여성회관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위탁운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15)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16)

[별표 1] <제정 17.12.6.>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제6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대 강 당	주간	3시간이내	40,000원	▶기본시간 : 3시간
	야간	3시간이내	50,000원	
다목적실	주간	3시간이내	30,000원	▶기본시간 초과 시간 당 10,000원 가산
	야간	3시간이내	40,000원	
소회의실	주간	3시간이내	20,000원	▶토요일은 평일요금의 100분의 20 가산
	야간	3시간이내	30,000원	
냉.난방비	대강당	시간당	20,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간 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그밖의 시 설	시간당	10,000원	

※ 사용시간

▶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 단, 사용시간 2시간이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간요금 징수

※ 평일(월~금요일), 휴관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

2. 수강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교육 수강료	월	10,000원	▶교재비, 재료비는 본인 부담

사 천 시 공 보

제 534 호 (17)

[별표 2] <제정 17.12.6.>

수강료 반환기준(제8조제2호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가.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1)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나.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수강기간”이란 징수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18)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3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천시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1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19)

호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세대주인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세대주인 사람
6.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7. 그 밖에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책무)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취약계층 주민은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취약계층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20)

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③ 읍·면·동장은 지원이 필요한 화재취약계층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34 호 (21)

[별지 서식] <제정 17.12.6.>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명 (세대주)		생년월일	(남/여)	세대원수	총명 (남, 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세대주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세대주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독거노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4. 동의거부권리안내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제한이 있음

「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세대주 (인)
세대원 (남/여)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2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3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23)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7.12.6.>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사 업 구 분		<input type="checkbox"/> 시장정비사업				
신 청 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			
	대 표 자	성 명	(남, 여)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추진위원회설립내역	설립목적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 치				
동 의 사 유 항	토지 등 소유자수	동의인 총수 :	인)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	인)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인)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div>						
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25)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4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①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26)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을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27)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4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28)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4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
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 라 한다)는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에 둔다.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평생학습센터 내의 강의실, 대강당, 학습실 등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각종 교육과정의 수강생 및 그 밖의 이용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강료”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및 개발, 상담운영
2.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3.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평생학습센터 학습동아리 조직과 동아리 지원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30)

비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 또는 장부, 기타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3. 제6조에 따른 감독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9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31)

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 특성상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09:00 ~ 22:00
2. 토요일 : 09:00 ~ 18:00

②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로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공공기관 및 공익단체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사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
3.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4.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
5.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32)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수강료 납부 및 면제) ①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생은 별표 2의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총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6.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65세 이상 노인
7.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
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33)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4조(강사위촉 및 강사료)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강사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6조(포상 등) 제14조에 따라 위촉 강사 중 평생학습센터 운영 프로그램 우수 강사에 대하여는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평생학습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34)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35)

[별표 1] <개정 17.12.6.>

사용료 징수기준(제10조 관련)

구분	공간별	구 분	시간	사용료 기준 (3시간이내)	비고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1층 (배움실) (나눔실) (행복실)	평일	주간	20,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간 당 10,000원 가산
			야간	30,000원	
		토요일	주간	25,000원	
			야간	35,000원	
	2층 (대강당)	평일	주간	20,000원	
			야간	30,000원	
		토요일	주간	25,000원	
			야간	35,000원	
	3층 (제1 강의실) (제2 강의실)	평일	주간	20,000원	
			야간	30,000원	
		토요일	주간	25,000원	
			야간	35,000원	

※ 사용시간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단, 사용시간 2시간이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간요금 징수

※ 휴관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36)

[별표 2] <개정 17.12.6.>

수강료 납부 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수강기준	월 액	비 고
자격, 취미, 교양과정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프로그램 당	10,000원	재료비 또는 교재비, 자격증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

사 천 시 공 보

제534호(37)

[별표 3] <개정 17.12.6.>

수강료 반환 기준 (제13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가.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1)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 까지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나.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1)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수업시작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수강기간”이란 징수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38)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4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39)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지급기준액	월 정 수 당
의원		월 1,828,000원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40)

규 칙

사천시 규칙 제65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강당, 다목적실, 소회의실 :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교육수강 희망자 : 교육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3조(사용허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41)

1.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사용신청자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수강 신청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교육수료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4조(사용료 면제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취소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2. 교육수강 취소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

제6조(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정한다.

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강사
3. 직업훈련교사
4.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42)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7조(강사채용 서류) 강사채용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2. 강의계획서
3. 해당분야 자격증
4. 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5. 그 밖에 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제8조(강사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의사를 표명했을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4. 강의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제9조(이용자의 범위) 교육수강생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43)

별지 제1호서식] <제정 17.12.6.>

교 육 수 강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신청과목					
수강료면제자 (※ 해당란에 ○표)		수급자(차상위 포함),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록장애 3급이상		접수 확인	(인)
교육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개월)			
<p>「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오</p> <p>※ SMS문자로 여성회관 기타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오</p> <p style="text-align: center;"><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출석부, 학습이력관리, 수료증 발급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회관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천시장 귀하

접 수 증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과목		수강료 구분 (※ 해당란에 ○표)		일반, 면제	
교육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개월)			
<p>「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p>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별 접수인원이 60퍼센트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 신청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p>※ 신청서상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p>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44)

[별지 제2호서식] <제정 17.12.6.>

시설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사용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단체명		성별	남	여
	주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행사명					
참석예정인원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대강당 <input type="checkbox"/> 다목적실 <input type="checkbox"/> 소회의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일, 시간)					
변경신청 ◦ 신청사유 : ◦ 변경사항 :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1부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설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사용자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연락처		
행사명			사용료	원	
사용(변경) 시설	<input type="checkbox"/> 대강당 <input type="checkbox"/> 다목적실 <input type="checkbox"/> 소회의실		사용(변경) 기간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45)

[별지 제3호서식] <제정 17.12.6.>

제 호

수 료 증

주 소 :

성 명 :

위 사람은 사천시 여성회관에서 실시한

제 기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46)

[별지 제4호서식] <제정 17.12.6.>

사 용 료 면 제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단 체 명	연 락 처		
	주 소			
사용목적 (행 사 명)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대강당 <input type="checkbox"/> 다목적실 <input type="checkbox"/> 소회의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일, 시간)			
면제사유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47)

[별지 제5호서식] <제정 17.12.6.>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 용 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 용 목 적 (행 사 명)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사 용 료 납 부 금 액		반환신청액			
취 소 사 유					
계 좌 번 호		(예금주 : / 사용허가 받은 자 기재)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48)

[별지 제6호서식] <제정 17.12.6.>

교육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

수 강 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수강과목			수 강 료 납부금액		
수강기간					
계좌번호			예금주명		
포기사유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교육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49)

규 칙

사천시 규칙 제65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50)

제2조(적용대상)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사용대상자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수강 신청 및 수강료 면제신청) ①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료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강료 반환 신청은 수강 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후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변경 신청서)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51)

에 따른 통지는 제2항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정한다.

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강사
3. 직업훈련교사
4.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8조(강사채용 서류) 강사채용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2. 강의계획서
3. 해당분야 자격증
4. 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5. 그 밖에 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제9조(강사의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강사 이력카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강사의 의무) 강사는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생 출석 관리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52)

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좌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33 호 (54)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 수강신청에 앞서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 신청서 접수, 수강료 징수, 반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강료 반환금 계좌번호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분확인(본인 여부),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한해 개인정보의 이용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및 사유 : 평생교육센터 운영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 개인정보 동의 및 거부 권리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강좌 수강료의 세외수입 처리 및 적합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에 한해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제1항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5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7.12.6.>

수강료 반환 신청서

수 강 자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수강과목			수 강 료 납부금액	
수강기간				
반 환 금 입 계좌번호			예금주명	
취소사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여)(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56)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7.12.6.>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여)										
	단체명		전화	사무실 :										
	주 소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 1. 강의실 명 () 2. 대강당														
사용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사용시간 (3시간 기준)	오전	회	합	계	일	회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	오전	회				
(총 일 시간)								(총 일 시간)	(총 일 시간)	(총 일 시간)				
사용 인원		총 명(남 , 여)						이용자 구분		일반	학생	기타		
								명 (남, 여)						
<p>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동 의 거 부 권 리 안 내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학습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p style="margin-top: 20px;">「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사천시장 귀하</p>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57)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7.12.6.>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사용(변경) 허가서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명(단체)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 여)			
사용 인원	계	남	여	이용자구분	계	학생	일반	기타
	명							

사용(변경)장소	
사용(변경)기간	
사용(변경)사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사용자 준수사항

1.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58)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7.12.6.>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 용 자	성 명 (대표자명)	(남, 여)	생 년 월 일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 용 목 적 (행 사 명)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사 용 료 납 부 금 액			반환신청액	
취 소 사 유				
계 좌 번 호		(예금주 : / 사용허가 받은 자 기재)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여)(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59)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7.12.6.>

강사 이력카드(제9조 관련)

사 진 (반명함판)	성 명		담 당 강 좌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학 력 및 경 력

최종학력	(전공 : _____)			
자격·면허	자격·면허명	발행처 (발급일자)	자격·면허명	발행처 (발급일자)
년 월 일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사 천 시 공 보

제533호(60)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7.12.6.>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강좌 운영 일지(제10조 관련)

운영일시	20 년 월 일 (: ~ :)
강좌명	
강의장소	
출석인원	명 (남 명 , 여 명)
강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작성자	강사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운영일시	20 년 월 일 (: ~ :)
강좌명	
강의장소	
출석인원	명 (남 명 , 여 명)
강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작성자	강사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